

예 산 총 칙

2017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719,838,371	21,595,151
일반회계	638,907,488	19,167,225
특별회계	80,930,883	2,427,926
공기업특별회계	60,652,933	1,819,588
상수도사업특별회계	32,829,886	984,897
하수도사업특별회계	27,823,047	834,691
기타특별회계	20,277,950	608,339
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	1,497,094	44,913
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	7,168	215
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	2,133,420	64,003
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	364,438	10,933
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	13,579,713	407,391
폐기물처리시설사업기타특별회계	1,879,725	56,392
지하수특별회계	816,392	24,492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,244,544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5,9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『지방재정법』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